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 2026.10.16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신의성실의 원칙과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대상회사 및 자산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본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이행방식은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재산의 유형, 투자목적·전략, 자산의 특성, 투자구조 및 관련 법령과 계약상 권한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회사는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과 리츠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리츠 등 상장 지분증권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실물 및 비상장 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자산의 취득부터 보유·운용,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투자 전 과정에서의 자산 점검, 리스크 관리, 가치 제고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대체투자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 사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등의 다양한 관계에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차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규정»,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전적인 관리를 통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거래 담당자는 거래 실행 전 해당 내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의 수준 및 완화 방안을 검토한 후 거래 실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관련 위험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거래가 가능하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의 관리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실행 여부 판단을 위해 ‘이해상충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고객 이익 침해 가능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평가하고, 해당 거래의 실행 여부 및 필요한 통제조치 등을 심의합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수행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한다.

회사는 상장 리츠 등 상장 지분증권 투자 시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무적·비재무적(ESG)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결권 행사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배당정책, 자본구조, 주주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견의 적정성, 경영진 및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법령 위반 여부, 자본정책의 적정성,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 등을 주요 점검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기준과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상장 리츠 등 상장 지분증권 투자 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자료 요청, 주주서한, 경영진 면담 등의 관여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규정」에 따라 투자대상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정보교류차단 절차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목록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회사는 운용하는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슈 발생 시 안전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협력사 선정 및 관리, 임차인 협력, 기후 리스크 및 환경 데이터 관리,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 방식은 자산의 특성과 투자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계약상 부여된 권리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관여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이드라인상 세부사항이 부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과 그 사유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의결권의 행사 여부와 내용 및 방법 등의 주요사항은 운용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해당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과 그 사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의결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최종 판단 근거를 기록, 보관합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이행에 대한 보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연단위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상장 리츠 등 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과 함께, 당사가 운용하는 대체투자 자산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수록하여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 결과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회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정보교류 차단 등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리서치 담당 부서에서 거시환경, 산업 및 부동산 섹터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내부 투자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ESG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주관하고,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ESG 내재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부서

책임자: 투자관리실 여경선 실장 (kyongsun.yoh@mastern.co.kr)

담당부서: 투자관리실 ESG팀 (esg@mastern.co.kr)